

 금융위원회	<b>보도 설명 자료</b>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스딜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 최 치 연(02-2100-1685)	<b>담 당 자</b>	안기빈 사무관(02-2100-1687) 남진호 사무관(02-2100-1686)
	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김 진 휘(02-2128-8080)		하승민 부장(02-2128-8216)
	은행연합회 본부장 이 인 균(02-3705-5184)		김수연 부장(02-3705-5326)

**제 목 :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 
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 
 (연합뉴스 3.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**

**1. 기사 내용**

- 연합뉴스는 3.6일 「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 ...」 제하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약 8배로, ...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.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**

-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·장기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,
  - 청년 자산 중 예금·적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보다 적절한 자산배분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
  - 가입자 수 등을 비롯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통계는 은행별 자료를 취합한 후 확인·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

-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, 은행연합회, 가입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운영되었습니다.
  - 은행들도 사회공헌 및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,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증가는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,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되었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,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  -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, 위험자산의 수익률 하락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,
  - 청년 관련 정책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따라 블로그,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.
  -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과 함께 잠재 장기고객인 청년고객 확보\*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습니다.

\* 청년 대상 알뜰폰 요금제 제공, 20대 전용 금융브랜드 출시 등

-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  - '20년에 소득이 없었고 '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'21년 소득이 확정(7~8월경)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습니다.

## 〈참고〉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한 안내

-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으로부터 만기(2년) 전일까지 연간 600만원 이하, 월간(월 1일~말일)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-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납입액에 대한 만기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.
- 일반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\*된 만기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\* 납입시기별로 ‘납입금액 × 약정상 기본이율(가입시 결정) ×  $\frac{\text{일수(납입일} \sim \text{만기일전일)}}{365}$ ’을 계산한 후 합계

-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,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,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.

□ 다만,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 등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,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등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사유\*로 중도해지하는 경우

\* 제93조의7 제8항 각 호의 사유

- ①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- ②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/ 가입자의 퇴직 / 사업장의 폐업 /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 등

- 중도해지 전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으며,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

- 중도해지 전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,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.

 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